

2020년도 1/4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유의 사항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임시학번을 부여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단체접수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학점 입력 후 학점인정신청서 및 서류 제출

I. 용어 해설

1. 학습자 등록

- 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 등 정보를 최초로 한번 등록하는 절차(기존 학습자등록자는 제외)
- 나.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 수업(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다.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2. 학점인정신청

- 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 나. 학점인정신청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 권장
- 다.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
- 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용 홈페이지(<http://www.cb.or.kr/orgreg.html>) 접속 후 미신청학점, 학점인정대상학교 및 시간제등록자 성적 입력
※ 입력방법은 **불임1】** 참조

※ 단체접수와 개인접수 방법의 예시

구분	접수방법	단체 접수	개인 접수
학습자등록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341번 「2020년 1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 인정신청 안내」 글 첨부자료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수수료와 관련서류들을 평생교육원으로 송금 및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후 관련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발송
학점인정신청		<p>본 안내자료 내 6 페이지 링크 주소로 로그인 하여 입력 후 수수료와 관련 서류들을 평생 교육원으로 송금 및 제출</p> <p>※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개인으로 접수 처리 됨</p>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후 관련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발송

II. 우리대학 단체 접수 방법

1. 접수 일정

구 분	1/4분기	비 고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2019. 12. 27(금) 10:00 ~ 2020. 01. 09(목) 17: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 증빙서류는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 3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만 가능함

(기준 미달 서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접수 받지 않아 신청 불가)

2.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제출서류

- 가. 등록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습자등록 양식을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수수료송금

나. 제출서류

- 1) 학습자등록신청서
 - 2) 주민등록등본 (개명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 3) 전공 면허증 사본 1부
 - 4)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2개 대학 이상 졸업 및 제적 시에는 각 대학 졸업증명서 및 제적증명서 모두 제출)

3.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용 홈페이지 접속(본 안내자료 6 페이지)

링크 주소 클릭) → 불임1] 참조하여 입력요령에 따라 **실명인증** →
학점인정신청 → 작성 후 학점인정신청서 및 해당 별지서식 포함출력 →
제출서류 첨부 후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수수료송금

나. 제출서류

- 1) 학점인정신청서(별지 포함)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할 것
- 2)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신청 시 졸업대학 성적증명서
(2개 이상 대학 졸업 및 제적자는 각 대학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3) 시간제 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4) 독학사 성적증명서 1부, 기관발급 과정이수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4. 수수료 및 송금계좌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

나.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6-101-222860 / 예금주: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송금(타명의 송금자는 미송금으로 처리)

5. 제출방법

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2020년 1월 9일(목) 17:00까지 도착 서류만 인정**

- 1) 우편주소 :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대구아트센터 3층 302호) 학점은행제 담당자 앞
- 2) 문의처 : 053)320-1283

6.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안내 (단체 및 개별 접수 공통사항)

가.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수수료 면제

- 1)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2) 단, 학습자 등록 수수료 4,000원은 면제 되지 않음)

7. 신청결과 확인 (단체 및 개별 접수 공통사항)

가. 신청 후 약 1~2개월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마이 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가능

III. 개인별 접수 방법

1. 개별 접수 일정

신청구분	1/4분기	비고
개별 접수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2019.12.16(월) ~ 2020.1.31(금) 10:00~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20. 1. 31(금) 소인까지 인정	온라인

※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만 가능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온라인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 「알려드려요」 섹션 →
[학습자등록 및 온라인학점 인정 신청] 배너 클릭

나. 학습자등록 신청 제출서류

- 1)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 2)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시 각 대학의 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 모두 제출 및 등록
3) 전공 면허증 사본 1부

다. 학점인정신청 제출서류

-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 2) 학점원별 별지 서식별 출력본
 -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시간제등록, 독학사 시험면제과정, 자격 등 신청내역이 있는 별지
- ※ 평가인정학습과목 신청은 제출서류 없음
- 3) 학점인정대상학교 및 시간제등록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성적증명서 각 1부
(2개 이상 대학 졸업 및 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4) 시간제등록 및 독학학위제 학점 취득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3. 수수료 안내

- 가. 결재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 나. 수수료
 - 1) 학습자등록 : 4,000원
 - 2) 학점인정신청 : 1학점 당 1,000원

4. 제출처

- 가. 우편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6층 학점·학력인증본부 학습자지원센터
- ※ 온라인에서 접수증 출력 → 발송용 서류봉투(A4) 앞면에 부착 발송**
-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만 가능 (분실 사고 대비)
 - 다.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후 각종 증빙서류(각 신청서/별지서식) 우편 제출
 - 라. 유의사항 :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

붙임1]

1. 학점인정신청방법

단체접수 및 개별접수 모두 학습자 본인이 학점 입력을 완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사이트 내에서 바로 신용카드 결재를 할 경우 개인접수 처리 되오니 반드시 평생교육원으로 송금해야 단체 접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 접속(아래 링크주소 클릭)
(<http://www.cb.or.kr/orgreg.html>)



나. 입력요령

1) 평가인정학습과목

화면에 자동으로 생성 되어 있으며 항목에서 미신청학점이 있으면 선택하여 학점 인정신청

2) 독학사 시험 (해당자만 입력)

독학사를 통해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학습자는 시험합격자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 없음. 단,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이수자의 경우 과정이수확인서 1부 제출.

3) 시간제이수과목

평가인정학습과목 항목에 없는 시간제로 수강한 과목을 발급받은 성적표를 참고하여 입력한 후 신청

4) 학점인정대상학교

본인의 전적대학(졸업 및 제적한 대학) 성적표를 참고하여 학점인정신청

다.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및 시간제등록 이수자 성적입력 시 유의사항

1) 출신대학의 학점 모두 입력

(학교/학습과목/희망학습구분/학점/이수년/학기/전공명/학제/지역)

2) 3년제 대학의 경우 120학점까지 신청 가능 (2년제 : 80학점까지 신청 가능)

3) 2개 대학에서 이수한 모든 학점 중 신청 가능

: 졸업한 대학 전공 학점 + 2개 대학 교양 학점 신청

4)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습과목 순서로 입력

5) 로마자(예: I, II, III, IV) 및 기호, (괄호) 사용금지

6) 숫자의 경우 괄호사용금지

: 사회복지개론(1)→사회복지개론1

※ 내용인 경우 괄호사용가능

: 가족상담(치료)→가족상담(치료)

7) 숫자 입력 시 성적증명서의 형식 유지

: 성인간호학11, 성인간호학21→성인간호학1-1, 성인간호학2-1

8) 과목명 반드시 검색 후 일치하는 과목명을 선택하여 입력

(선택 과목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을 체크한 후 과목명 입력)

9) 대학명도 반드시 검색되는 대학명을 선택하여 입력

(선택 대학명이 없을 경우, 본원에 연락하여 대학명을 전산 리스트에 부여 받은 후 입력)

10) 시간제 과목에 한해 성적입력이 가능하며, 성적이 소수점 단위까지 기재된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예: 85.5점 ⇒ 86점)

11) 학점 절사는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원만 해당되며 제한학점까지 신청할 경우
해당(2년제:80학점, 3년제: 120학점)

12) 절사는 1과목만 선택 가능함

13) 전공은 모두 **전공선택**으로, 교양 및 교직은 **교양**으로 입력 ※(불임2) 참조

14) 학점은행제로 이수하게 되는 실습 4과목이 출신대학에도 있다면 미 입력

15)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경우, 학습구분을 클릭하여 선택 가능

16) 2개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의 경우 동일과목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음

예) 2010-1학기, 2010-2학기, 2011-1학기에 모두 '영어'를 수강하였다면(재수강 제외)

☞ 영어1 (2010년 1학기), 영어2 (2010년 2학기), 영어3 (2011년 1학기)로 입력

(2010-2학기에 이수한 영어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2010-1학기는 영어1,
2011-1학기는 영어3 으로 입력)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불인정 처리 사례

- 졸업한 대학의 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중복해서 과목인정 하지 않음)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미 기입 및 잘못 입력한 경우
- 학점인정신청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기재내역이 상이할 경우

붙임2]

지금까지 미인정 처리된 전공 과목명(예시)

전공명	미인정 전공 과목명
치위생학	구강보건교육학실습

교양인정 예상과목

전공명	전공으로 이수하였지만 교양으로 인정 예상되는 과목
치위생학	일반화학 / 생활미술 / 전산학실무

교직과목에 대한 학습 구분

교양 인정 과목	일반선택 인정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사회, 실기교육방법론 등	특수교육학, 각과지도법, 교육실습, 교육방법, 교과교육론, 학교와 지역사회,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 인정여부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콜센터(T.1600-0400)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붙임3]

학점은행제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안내

1. 평가인정학습과목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과목

2.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중퇴하거나 졸업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단,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3. 시간제등록

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일반인에게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서, 각 대학의 학칙에 의거 시간제등록을 통해 과목을 이수

4. 자격증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단, 전공 연계 여부의 따라 전공필수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양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

5.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6. 중요무형문화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이거나,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